



제 433회 국회 (임시회)
제 3차 교육위원회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자격 변경 〉

■ 정을호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6929호)

2026. 4.

교 육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최선영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자격 변경	2

I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 : 정을호의원 등 20인
2. 발 의 일 : 2026. 2. 20.
3. 회 부 일 : 2026. 2. 23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·직원 및 재학생,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, 동문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도 그 밖에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대학교육기관의 장이나 이사장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우려가 있고, 이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음.

이에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요건 중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그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32조의3제2항제3호).

Ⅲ. 검토의견

1.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자격 변경

가. 개정안의 요지

- 개정안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자격 중 ‘그 밖에 동문 및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’을 ‘학생이 추천한 동문’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,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그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32조의3제2항제3호).

[개정안 조문대비표]

현행	개정안
제32조의3(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) ① (생략)	제32조의3(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원,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, 제2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, ----- ----- ----- -----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<u>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</u>	3. <u>학생이 추천한 동문</u>

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③ · ④ (생 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---	-----------------------

나. 검토의견

- 현행법은 교육시설의 신축·증축 및 개·보수,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, 이를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함.¹⁾
- 이러한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하기 위하여 현행법 및 시행령은 기금운용심의회를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 설치·경영 학교법인에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, 현행법 제32조의3제2항에서 위원 자격으로 (제1호)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·직원 및 재학생, (제2호)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, (제3호) 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함.

1) 「사립학교법」

제32조의2(적립금)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·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·증축 및 개수(改修)·보수(補修),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(이하 “적립금”이라 한다)을 적립할 수 있다. 다만,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·증축 및 개수·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.

②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,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·건축적립금·장학적립금·퇴직적립금 및 그 밖에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구성한다.

③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,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등록금 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.

1.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
2. 적립금의 10분의 1 한도에서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

- 개정안은 이 중 (제3호) ‘그 밖에 동문 및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’을 ‘학생이 추천한 동문’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,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그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.
- 현행법과 개정안의 위원 자격을 비교해보면, 두 자격은 모두 ‘동문’을 규정하고 있으나, 개정안은 동문을 ‘학생이 추천’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고, ‘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’을 위원 자격에서 제외하는 차이가 있음.
- 개정 대상인 위원 자격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인원 기준이 없으므로, 해당 자격을 갖춘 위원은 위원장 재량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됨.
- 다만 현행법은 위원회 구성시, 교원, 직원, 재학생을 각각 2명 이상 동일 비율로 포함하도록 하여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수렴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, 2026.5.12.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에서도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1명에서 2명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다양한 구성원을 동일 비율로 포함하면서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는데,
- 개정안에 따라 학생의 추천을 전제로 한 동문이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경우, 위원 구성에서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균형 있는 의견수렴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음.

또한 개정안에서 ‘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’이 제외됨에 따라, 해당 자격으로 참여하는 기부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기부금이 감소하는 등 사립학교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[기금운용심의회 개요]

구분	「사립학교법」 제32조의3(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)	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 제14조의8(기금운용심의회 구성), 제14조의9(기금운용심의회 운영)
설치	(제32조의3제1항) •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 설치 • 경영 학교법인 이사장이 설치	(제14조의8제1항) •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 설치·경영 학교법인에 각각 설치
역할	(제32조의3제1항) •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	(제14조의9제1항) • 심의사항 - 매 회계연도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-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 - 그 밖에 심의 필요 사항
구성	(제32조의3제2항) • 인원 수: 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 • 위원 자격 -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·직원 및 재학생 * 교원,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-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* 1명 이상 (2026.5.12.부터 「사립학교법」 법률 제21073호에 따라 2명 이상) - 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	(제14조의8제2항, 제3항, 제5항) • 위원장 - 대학교육기관: 대학교육기관의 장 - 대학교육기관 설치·경영 학교법인: 학교법인 이사장 • 위원(임기 2년) - 교원, 직원, 학생, 외부 전문가,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, <u>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</u>

□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, 사립대학법인협의회, 12개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은, 현행법은 위원회를 교원·직원·학생 각 2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2026.5.12.부터 외부전문가 역시 2명 이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므로, ‘학생이 추천한 동문’으로 개정할 경우 학생 몫이 증가하여 구성원 간 균형이 어긋날 것으로 판단되며,

‘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’이라는 범위를 동문으로 한정할 경우 위원 선임의 선택지가 더욱 제한되어 기금 관리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가 곤란하고,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부자 등이 배제되어 적립금을 기부한 기부자의 의사반영이 차단되어 기부금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, 법률 개정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.

문 의 처
02)6788-5189